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873,511,299	206,205,339
일반회계	5,976,617,912	179,298,537
특별회계	896,893,387	26,906,802
공기업특별회계	447,795,503	13,433,865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447,795,503	13,433,865
기타특별회계	449,097,884	13,472,937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108,689	3,261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393,622,757	11,808,683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7,890,319	1,436,71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329,109	99,873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4,147,010	124,41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669,43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7,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